



부산신항마린애시앙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년 8월2일)

- 신항 마린애시앙은 분양홈페이지(http://busansinhang7.sarangeuro.co.kr)와 견본주택 방문관람을 운영 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운영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부터 입주개시일 전까지이며 관람시간은(10:00~17:30)입니다. 분양상담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가능하며 운영시간(10:00~17:30) 외에는 당사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및 상품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콘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인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시,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전사공 후반양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 되어 미확정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습니다(23.06.26 서울공사 원로)이 점 필히 인지하시어 청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포함을 별도로 계약하여야 하며, 추가선택품목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별 제54조 제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준형, 벽지, 조명, 위생기구,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본 아파트는 전사공 후반양 단지로 공정 진행상 마이너스 선택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 8. 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원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본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환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인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경제자유구역)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8월 14일(월)	8월 16일(수)	8월 17일(목)	8월 23일(수)	8월 25일(금)~8월 26일(토)	9월 4일(월)~9월 6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접수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제출	방문계약 (09:00~17:00)
참조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사업주체 견본주택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51-6)	사업주체 견본주택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51-6)

■ 2023.07.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항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 - 6630호(2023.08.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38-5 (주거7)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3~25층 6개동 총 484세대

(특별공급 280세대(일반(기관추천) 47세대, 다자녀가구 47세대, 신혼부부 85세대, 노부모부양 13세대, 생애최초 41세대, 경제자유구역 4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 지하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소총 우선 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경제 자유구역	소계					
근교 주택 단지	2023 000364	01	59, 9962	59	59, 9962	20, 4363	80, 4325	30, 1314	110, 5639	35, 0750	140	14	14	25	4	12	14	83	57	10			
		02	84, 3549A	84A	84, 3549	28, 6567	113, 0116	42, 3649	155, 3765	49, 3156	194	19	19	34	5	17	19	113	81	10			
		03	84, 9872B	84B	84, 9872	28, 2946	113, 2818	42, 6824	155, 9642	49, 6853	75	7	7	13	2	6	7	42	33	3			
		04	84, 9904C	84C	84, 9904	28, 4122	113, 4026	42, 6840	156, 0866	49, 6872	75	7	7	13	2	6	7	42	33	3			
		합 계											484	47	47	85	13	41	47	280	204	26	

- 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m²) × 0.30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소점오류 등 기민점이 생길 수 있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금액, 원)

주택형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잔금시	
59, 9962	5층 이상	100	55, 911, 265	175, 088, 735	231, 000, 000	23, 100, 000	207, 900, 000	
	4층	10	54, 943, 105	172, 056, 895	227, 000, 000	22, 700, 000	204, 300, 000	
	3층	10	53, 974, 944	169, 025, 056	223, 000, 000	22, 300, 000	200, 700, 000	
	2층	10	53, 006, 784	165, 993, 216	219, 000, 000	21, 900, 000	197, 100, 000	
	1층	10	52, 038, 623	162, 961, 377	215, 000, 000	21, 500, 000	193, 500, 000	
84, 3549A	5층 이상	154	78, 461, 401	245, 538, 599	324, 000, 000	32, 400, 000	291, 600, 000	
	4층	10	77, 250, 577	241, 749, 423	319, 000, 000	31, 900, 000	287, 100, 000	
	3층	10	76, 039, 753	237, 960, 247	314, 000, 000	31, 400, 000	282, 600, 000	
	2층	10	74, 828, 929	234, 171, 071	309, 000, 000	30, 900, 000	278, 100, 000	
	1층	10	73, 618, 105	230, 381, 895	304, 000, 000	30, 400, 000	273, 600, 000	
84, 9872B	5층 이상	63	78, 763, 893	245, 236, 107	324, 000, 000	32, 400, 000	291, 600, 000	
	4층	3	77, 548, 401	241, 451, 599	319, 000, 000	31, 900, 000	287, 100, 000	
	3층	3	76, 332, 909	237, 667, 091	314, 000, 000	31, 400, 000	282, 600, 000	
	2층	3	75, 117, 417	233, 882, 583	309, 000, 000	30, 900, 000	278, 100, 000	
	1층	3	73, 901, 925	230, 098, 075	304, 000, 000	30, 400, 000	273, 600, 000	
84, 9904C	5층 이상	63	78, 702, 651	245, 297, 349	324, 000, 000	32, 400, 000	291, 600, 000	
	4층	3	77, 488, 104	241, 511, 896	319, 000, 000	31, 900, 000	287, 100, 000	
	3층	3	76, 273, 557	237, 726, 443	314, 000, 000	31, 400, 000	282, 600, 000	
	2층	3	75, 059, 010	233, 940, 990	309, 000, 000	30, 900, 000	278, 100, 000	
	1층	3	73, 844, 463	230, 155, 537	304, 000, 000	30, 400, 000	273, 600, 000	

2.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헌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지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호 및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취소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주택공급 유효범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인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과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가. 주택공급신청자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주택공급 유효범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학기만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청약예금)이 85m ²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청약예금)이 85m ²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청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분.(단, 가구요건 등 우선순위에 기준은 해당 기관청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제외
-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 경남본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남지정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합과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처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재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생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신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자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1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처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재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신은 가족관계증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신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7.01. ~ 12.3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 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3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따부모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양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양양자 및 피양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양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처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4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항의 소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임양)를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 인 가구는 추천제에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 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이내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유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유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7.01. ~ 12.3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입주자처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7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처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재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대상자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자.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이다.1.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부산신항경제자유구역 안에 당해지구로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당해지구 안에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2. '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기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말한다.3. '약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을 말한다.4.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을 말한다.5.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를 말한다.

3. 일반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처측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해외동포 제외)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에 대상으로 주택행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능함.

■ 입주자처측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신 청 자 격
전용	60㎡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천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처측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잔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잔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잔액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잔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60㎡초과 85㎡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85㎡